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시정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 및 사기진작
- 나.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 부여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(안 제23조제7항)
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: 10일
 -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: 20일
- 나.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(안 제23조제8항)
-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: 1일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.
2. 1회 휴가는 5일 이상으로 하되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.
3.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은 이를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·관리 하여야한다.

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미시 조례 제685호에 따라 삭제된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3조

제7항을 적용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잔여일수가 5일 미만이라도 1회로 사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</u> 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<u>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</u> 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.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.</u> <u>2. 1회 휴가는 5일 이상으로 하되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.</u> <u>3.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은 이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</u> 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~ ⑥ 생략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조 석 희
	담 당	강 호 근
	담 당 자	조 용 경 (480-6754)